

2018년도 2/4분기

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18. 7.

감사위원회

1. 개요

□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□ 보고대상

- 기 간 : 2018. 4. 1. ~ 6. 30.(2018년 2분기)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원순씨 핫라인) 및 오프라인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

□ 접수결과

- 2018년 2분기 총 192건 접수

[표 1] 2018년 2분기 청구별 월별 접수현황 (단위: 건)

접 수 창 구	합 계	4월	5월	6월
공 익 신 고	49	13	7	29
공직자비리신고	143	51	46	46
부 정 청 탁	-	-	-	-
퇴직공무원특혜	-	-	-	-
합 계	192	64	53	75

※ 전 분기(2018년 1분기) 접수 건수 176건에 비해 증가

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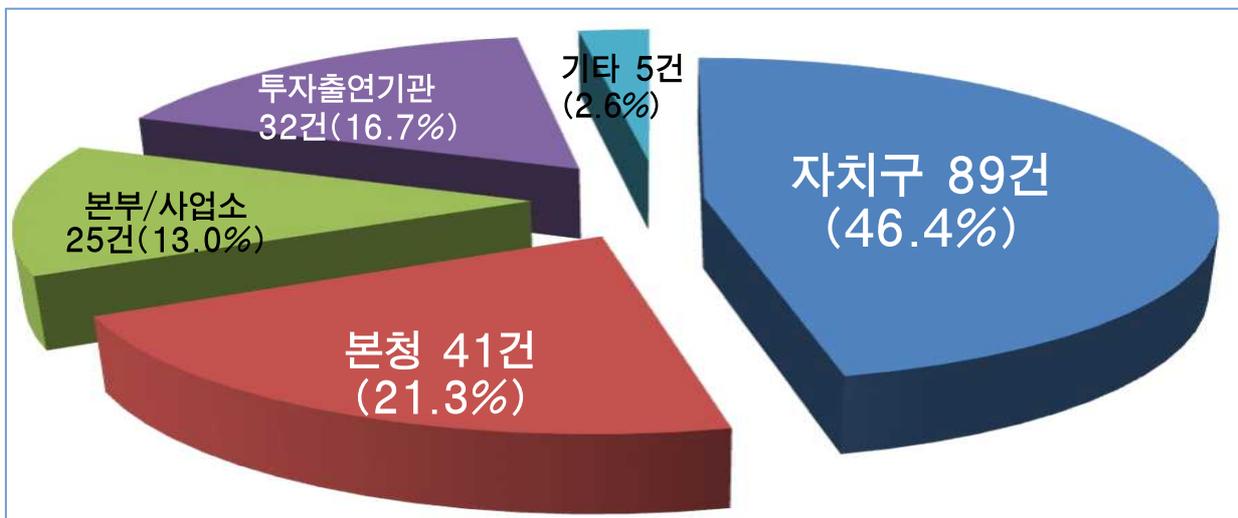
(단위: 건)

경로	합 계	온 라 인 홈페이지/모바일	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	기 타 우편/방문/팩스
접수건수	192 (100%)	153 (79.7%)	12 (6.3%)	27 (14.0%)

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□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-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89건(46.4%)으로 가장 많았음
 - 건축법, 식품위생법, 하천법 등 공익신고 창구로 28건 접수
 - 업무부적정 사항이나 계약과정 불공정 등의 공직자비리신고 61건
- 본청 소관 41건(21.3%), 본부·사업소 소관 25건(13.0%)
 - 본청은 공익신고 10건, 공직자비리신고 창구로 31건 접수
 - 본부·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7건, 공직자비리신고로 18건 접수
-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 32건(16.7%), 기타 5건(2.6%)
 - 투자출연기관 관련은 공익신고 4건, 공직자등 비리신고 28건
 - 기타 5건은 법원, 경찰, 사기업 등 타 기관 사무의 제보



3. 공익제보 분류

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192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150건

[표 4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

(단위 건)

총계	공익제보 해당 150건		일반민원/기타
	부패신고	공익신고	
192 (100%)	104 (54.2%)	46 (23.9%)	42 (21.9%)

*청원/제안/건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,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 공익제보 처리에 준해 접수 답변하고 있음

※ 조례상 ‘공익제보’ 해당 신고 범위

구 분	개 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	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	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284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공정한 업무수행, 부당이익의 수수금지, 업무숙지의 의무,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, 인지도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 위반 등

4. 제보내용 유형 분석

□ 제보 세부내역

○ 부패신고 해당 104건 세부 내용

[표 5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건)

구분	소관기관	건수	내 용
금 품 수 수	본 부 · 사 업 소	1	공무원 또는 직원의 금품수령
	소 계	1	
복 무	본 청	1	허위출장/근태/성희롱 등 공무원 복무관련
	본 부 · 사 업 소	2	
	자 치 구	8	
	투 자 출 연 기 관	2	
	소 계	13	
불 공 정 계 약	자 치 구	3	입찰 계약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등
	투 자 출 연 기 관	10	
	소 계	13	
업 무 부 적 정	본 청	16	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미숙/부주의 또는 고의로 발생한 사건(업무소홀 혹은 업무 부당행위)
	본 부 · 사 업 소	9	
	자 치 구	23	
	투 자 출 연 기 관	7	
	소 계	55	
인 사	본 청	4	기관의 부당 전보·인사 등
	본 부 · 사 업 소	3	
	자 치 구	1	
	투 자 출 연 기 관	5	
	소 계	13	
품 위 손 상	본 청	5	영리행위 등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
	자 치 구	4	
	소 계	9	
총	계	104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○ 공익신고 해당 46건 세부 내용

[표 6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건)

구 분	건수	내 용
건 축 법	4	건축물 부당허가, 부당 철거명령 등
건 축 사 법	1	건축사 자격 없이 사업
공 중 위 생 관 리 법	1	건물 내 금연지역에서 흡연행위
노 인 복 지 법	1	시설의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 의심 등
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법	1	요양센터의 부실운영 및 어르신 케어 미흡
도 로 법	2	도로에 노점상의 무단점유 등
도 로 교 통 법	1	노상에서의 불법주차
사 회 복 지 사 업 법	4	복지법인의 부실 운영 및 부당 보조금 수령
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법	2	건물 내 소방관련 시설기준 미준수
식 품 위 생 법	3	무허가 음식 조리 및 판매 등
영 유 아 보 육 법	5	어린이집의 운영 부실, 원장의 업무부적정 등
의 료 법	1	의사의 허위홍보 의심
주 택 법	5	아파트 관리상 운영 문제,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위 의심 등
하 천 법	15	유수 흐름 방해 및 하천 물의 사적사용 등
총 계	46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5. 처리 결과 및 조치 성과

□ 공익제보 처리 내역(18년 1분기)

[표 7] '18년 1분기 공익제보 해당 사건 처리 현황 (단위 건)

구분	계	처분 및 개선		종결				조사중	취하
		처분(조치)	개선 등	해당 없음	증거 불충분	중복 종결	권한 없음		
부패신고	71	2	11	23	9	9	-	9	8
공익신고	41	6	9	10	4	5	-	4	3
부정청탁	1	-	-	1	-	-	-	-	-
총계	113	8	20	34	13	14	0	13	11

※ 개선 등 내역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(조례 제13조 제5항)

□ 처분(조치)사항

[표 8] 공익제보 조치(요구) 결과 (단위 건)

번호	신고구분	신고 내용	처분기관	조치 내역
1	공익신고	사무실에 다가구 주택을 불법 증축	자치구	이행강제금 부과, 시정명령
2	공익신고	음식점 허가 신고 없이 영업	자치구	수사의뢰
3	부패신고	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등	자치구	훈계4, 주의3, 부서경고2, 환수(29,562,650원)
4	공익신고	도로의 무단점용	자치구	변상금 부과
5	부패신고	예정가격 작성절차 및 작성기준 미준수 등	자치구	통보2, 주의요구1
6	공익신고	어린이집 원장전임 기준 및 배치기준 위반	자치구	시정명령
7	공익신고	미신고 도색작업장 및 대기 무단배출	자치구	수사고발
8	공익신고	공동구매 평가기준 및 결과공개 불충분	자치구	부서통보3